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긴급자동차 정차 시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4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경태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07. 15.
3. 회 부 일 : 2024. 0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접근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정차’한 경우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접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긴급자동차¹⁾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정차한 경우’에도 다른 운전자들이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 ③ (생략)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u>접근하는</u>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접근하거나 정차하는</u> ----- ----- -----. ⑤ · ⑥ (생략)

현행법 제29조²⁾ 제4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소방차
- 나. 구급차
- 다. 혈액 공급차량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경우에 운전자에게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차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의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제5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진로 양보만을 하도록 하고 일시정지의무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차를 추돌하는 사고³⁾가 발생하는 등 소방차 및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정차’한 경우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접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다만,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모든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도로의 폭이 좁거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차량 흐름이 크게 방해받아 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긴급자동차나 구조 차량의 도착 지연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3) 영동고속도로 횡성 구간서 1차사고 처리 중 경찰차 덮친 BMW...차량 3대 폐차”(‘24. 5. 18. 내외경제tv)

또한,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뒤따르는 차량이 갑작스럽게 멈춰 서는 앞 차량을 피하려다가 급정거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충돌 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해외의 경우 대체로 일시정지보다는 감속이나 주의 운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긴급자동차 주행 관련 해외 사례>

국 가	주요 내용
미 국	- 대부분의 주에서 "Move Over" 법 시행 - 정차한 긴급차량 근처를 지날 때 차로를 변경하거나 감속 의무 부과
영 국	- 도로교통법(Highway Code)에 따라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권 부여 - 정차한 긴급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강조
독 일	- "Rettungsgasse"(응급 차선) 시스템을 운영, 긴급차량이 지날 때 모든 운전자는 운행 중인 차로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방향으로 이동하여 서행 또는 일시정지 - 정차한 긴급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만 규정
일 본	- 우리나라와 같이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접근 시 교차로를 피하여 좌측에 붙어서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장소의 경우 도로의 좌측에 붙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 - 다만, 긴급차량이 정차한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음
호 주	- 일부 주에서 "Slow Down, Move Over" 법을 시행,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 서행 및 차로 변경 의무 부과
캐나다	-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긴급차가 정차 중인 경우 서행 및 차로 변경

※자료: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개정안의 목적과 취지가 반영되고 전술한 부정적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⁴⁾와 동일하게 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①긴급자동차가 수행 중인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고, ②다른 차마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정지 없이 진로를 변경하여 서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사실을 다른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한 경우에만 적용하게 하는 등의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44

4)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